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노인인권의 중요성

오늘날 인구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 역시 기대수명 연장 및 낮은 출산율로 인해 급격하게 인구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 통계청 자료

_ 기대수명은 2040년 86.9세(남자 84.7세, 여자 89.1세), 2065년에는 90.0세(남자 88.4세, 여자 91.6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_ 합계출산율의 경우 1970~1974년 4.21이었는데, 2015년 1.24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2050년 1.38로 예상

_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1960년 2.9%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그리고 2017년부터는 14.0%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 2026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예정이며, 2065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_ 특히 초고령층이라 할 수 있는 85세 이상 인구구성비는 2015년 전체 인구의 1%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65년 1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Preventing Ageing Unequally)'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OECD 회원국 중 1위이며, 노인자살률 역시 1위이다,

우리 사회 노인은 다른 연령층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노인과 비교할 때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다. 사고,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은 일정 시기가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노인은 청·장년에 비해 자연수명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인 인권이 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권 관련 사회적 관심 및 정책·제도가 마련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 빈곤, 자살, 학대, 건강 및 돌봄 문제, 사회참여 등 노인인권 개선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고령의 홀로 사는 노인과 만성질환, 치매 노인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노인인권의 개념

• 인권의 기본 개념

인권(Human Rights, 人權)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기본적 권리로서 시대나 상황에 무관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즉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며, 계층이나 성별, 연령과 같은 귀속적 요인은 물론 어떤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_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전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 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25조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_ 유럽연합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 제25조

노인의 권리 분야에서 "존엄성 있는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규범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생명 권,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_ 「대한민국 헌법」제10조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_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의 개념을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 노인인권의 개념

다른 연령집단과 마찬가지로 노인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로서, 인권과 노인인권의 개념은 다르지 않고, 그 대상만 노인으로 국한된다는 입장(권중돈, 2012)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인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나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받지 않

을 권리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권중돈, 2012), 본 보고서는 노인인권을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라고 정의한다.

▨ 노인인권에 대한 국제동향

- 노인권리선언(Declaration of Old Age Rights)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유엔은 '노인권리선언'을 발표하였는데, 가장 먼저 노인권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노인권리선언'은 사회권을 중심으로 원조를 받을 권리, 의식주, 노동에 대한 기본 권리에서부터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의 케어에 관한 권리, 여가의 권리에서부터 안전, 안심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 10가지 권리가 제시되었다.

- 비엔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1982년 7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세계고령화대회에서 비엔나 국제고령화 행동계획'이 채택되고, 같은 해 유엔 총회에서 인준되었다.
 이 계획은 인구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노인의 잠재적 개발능력과 의존 필요성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조사, 자료수집과 분석, 훈련과 교육을 위한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과 영양, 노인소비자 보호, 주거와 환경,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분야를 포함한 고령화 과정에 있는 개인들의 관심분야와 관련된 권고를 포함한다.

-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년 유엔은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 5개 영역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18개 원칙을 제시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제정하였다.
 이 원칙은 노인들의 건강과 영양, 노인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 강화, 노인들의 잠재적 능력 개발 필요성을 강조한다.

-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MIPAA;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현상에 대응하여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제2차 고령화 총회가 개최되고,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이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며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사회에 계속적 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인인권 관련 법률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이 법 제2조에 따르면,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 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 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 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 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고용상의 연령차별금지와 이와 관련된 조사 및 권고, 시정명령 등을 규정하여 노인을 포함한 고령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며, 2013년 개정을 통해 사업 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주거생활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노인 등 부양지원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정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로 명시(제1조)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하여 장애인·노인 등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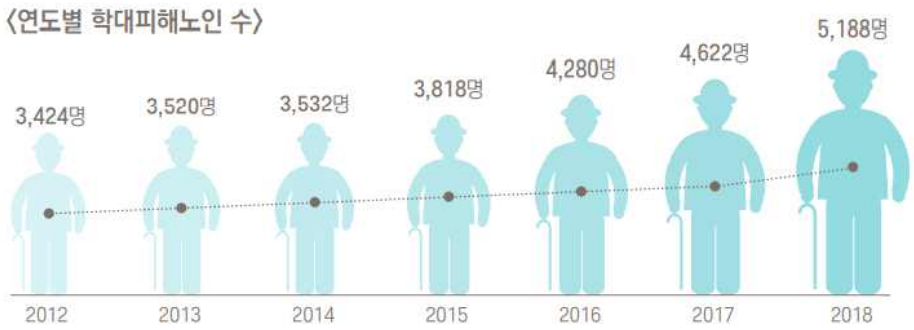
• 「노후준비지원법」
「노후준비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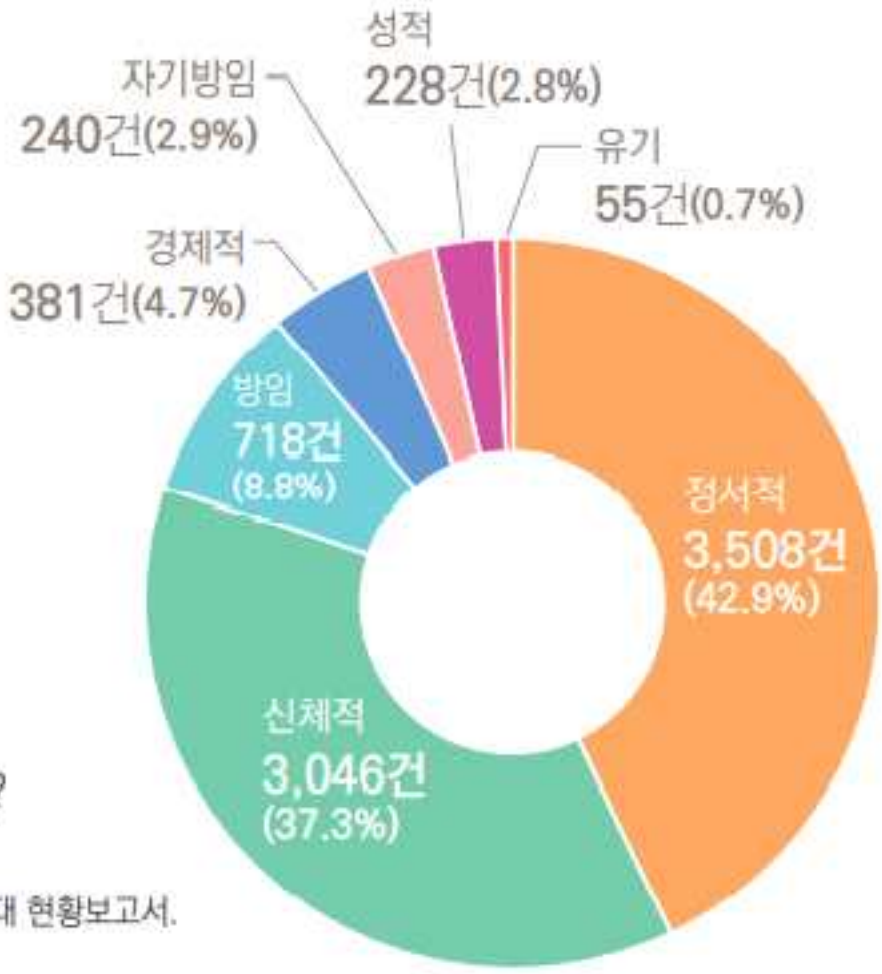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 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 **노인학대 현황**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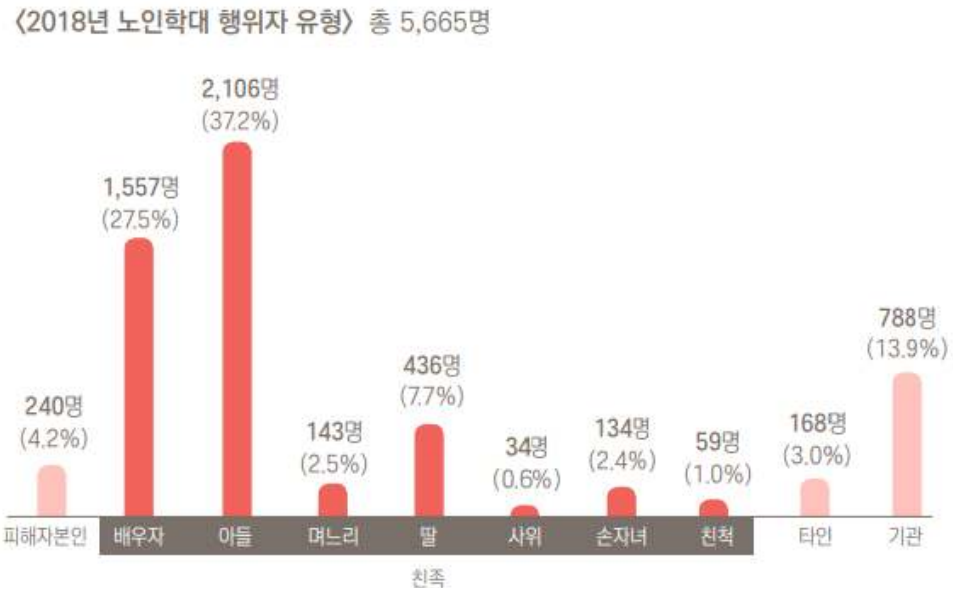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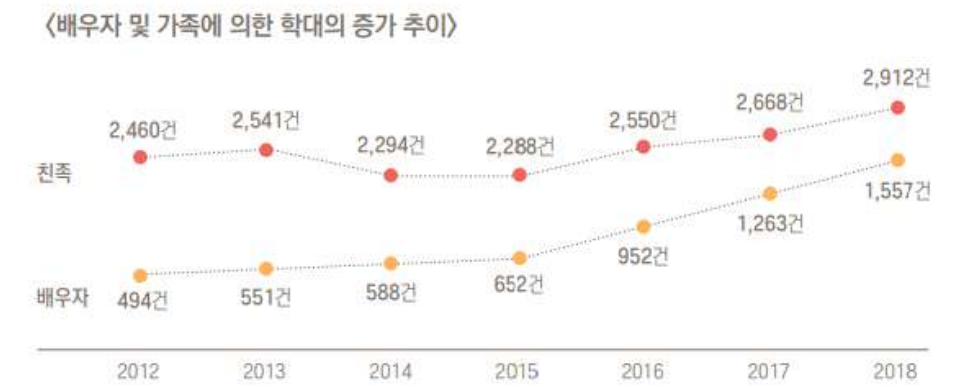




.?

대 현황보고서.





노인학대의 특성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을 말하며, 구체적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면 신체 구타・억압・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림, 강제로 가둠, 이동을 통제함,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장치・약물 등을 단절함,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투입, 강제노동 등이 있습니다. ○ 정서적 학대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을 말하며
구체적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면 반말,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등

○ 성적 학대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희롱, 성추행, 강간의 성폭력 등과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며,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면 성관계 강요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을 말하고,

○ 경제적 학대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면 노인의 통장을 동의없이 갈취,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사용을 통제함 등

○ 방임·자기방임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방임 · 자기방임은,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또는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하며,
이 경우 경제적 학대의 예측징후로는,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음,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야윔 등 또는 자기방임으로 스스로 식사거부하거나 비위생적인 집안환경 등을 말합니다.

○ 유기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하며,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면, 노인의 시설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두절, 낯선장소에 버림 등

사례연구

Q&A	Q.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A.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Q.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의 행동교정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 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A.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인학대 사례	○ 신체적 학대 • 사례1 D노인은 젊어서부터 자신의 아내인 H노인에게 술을 마시면 폭행을 일삼아 왔으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도 술이 깨면 정말 다정한 남편이기에 H노인은 그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큰딸은 이런 사실이 동네에 소문이 나지 않도록 부모님을 거의 집에 가두어 놓는 상태이다. 그런데 최근, D노인이 술에 취해서 어린 손녀들까지 때리려고 하여 집에 온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 경우 신체적 학대의 예측징후로는,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얼굴, 목, 팔, 다리 등 멍이나 할퀸 흔적, 화상 흔적, 묶인 흔적 외관상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서 가려진 상처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없는 행동이나 활동수준의 변화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 사례2 A요양보호사는 중증치매를 앓는 B노인이 비위관(콧줄)을 자꾸 빼서 걱정이 가득하다. 치매와 고령으로 인해 식사만으로는 영양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통해 영양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계속 비위관을 빼는 바람에 사전 동의없이 양손에 억제대를 사용했다. 비위관을 다시 삽입할 때마다 어르신이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바람직한 대처방안으로는, 이 경우 생명유지의 목적으로 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을 경우, 또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 정서적 학대 • 사례1 최근 J노인의 표정이 부쩍 어두워 노인종합복지관 H사회복지사는 상담을 진행하였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소외감으로 힘들다며 아무도 본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 등 같이 살아도 혼자 살고 있는 느낌이라고 털어 놓으셨다. 따로 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나갈 수도 없고 손자들조차 자신을 본 척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셨다. 이 경우 정서적 학대의 예측징후로는, 흥분 또는 화가 난 모습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무반응,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따돌림이나 소외되고 있음을 시설 종사자에게 고함

	가족, 동료노인, 종사자 등이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무시하는 모습 • 사례2 "뭐라고?" "어르신, 이쪽,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내다보니 A노인과 B요양보호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A노인은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요양보호사가 반말 섞인 말투와 큰 소리로 말하다보니 흡사 싸우는 것처럼 보여 행여 보호자들이 보고 오해할까 걱정된다. 이 경우 바람직한 대처방안으로는,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은 소리의 높낮이와 강도에 대한 감지능력을 변화시켜 고음이나 큰 소리를 듣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노인이 되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크게 소리를 지르듯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음으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 반말을 하거나 이름만 부르는 등 노인을 어린아이 대하듯 해서는 안 되며, 직원교육을 통해 노인과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성적 학대 • 사례1 거동이 불편한 A노인은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최근 손녀가 게임 중독에 빠지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쏟아내곤 하였다. 손녀가 A노인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말들을 하였다. 다행히 상황을 목격한 장기요양요원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경우 성적 학대의 예측징후로는,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을 보이거나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기·항문부위 주변에 타박상이나 하혈이 있거나, 분노 또는 수치심을 보이고,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거나, 성희롱에 대한 불쾌감을 직원에게 말함 • 사례2

	시설 입소자 목욕문제로 보호자의 전화를 받은 K사무국장은 직원배치표를 골똘히 보고 있다. 보호자는 여성 요양보호사가 아버지께 목욕서비스를 하는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시설 내 요양보호사 중 남자직원이 너무 적어 모든 남자어르신의 목욕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어진다. 이 경우 바람직한 대처방안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가능한 노인과 동성인 요양보호사를 목욕서비스에 배치하여야 하며, 인력 부족에 관해서는 채용 등과 같은 방안으로 최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입소계약서에 의거하여 동의한 사항을 노인 및 보호자에게 인지시키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경제적 학대 • 사례1 노부부는 부양을 전제로 큰아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 시켜주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큰아들 내외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지 않고, 음식도 자기 식구들이 먹는 것보다 소홀히 대접하기 시작했다. 또한 K노인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함에도 전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 딸은 현재 부양비 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고 이런 사실이 친척들에게 소문이 날까 창피하다며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에게 상담을 문의해왔다. 이 경우 경제적 학대의 예측징후로는,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노인을 강요하거나 허락 없이 재산관련 서류를 처리함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를 가로챔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 사례2
요즘 C노인의 얼굴이 부쩍 어두워 보인다. 아들이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오는 통장관리를 하는데 면회도 오지 않고 어쩌다 찾아오더라도 용돈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노인들은 자유롭게 물품도 구매하고,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C노인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경우 바람직한 대처방안으로는,
노인의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갖거나 이용할 권리,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어르신이 보호자에게 권리를 위임했어도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르신 개인 소유 통장 등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노인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어 노인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에서 위임받아 관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에서 입출금내역 및 사용결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두어야 하며, 분기별 또는 요청 시에 수시로 재정사용 결과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 방임·자기방임
• 사례1
도시락 배달을 위해 E노인 집에 방문할 때마다 사회복지사는 마음이 좋지 않다. 악취가 나고 계절과 맞지 않은 옷가지들이 쌓여있는 등 불결한 환경에 살고 계신 데다가 심지어 상한 음식을 드신 흔적이 곳곳에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음식 양을 줄이고 있다고 하셨다. 사회복지사는 E노인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색 중이다.
이 경우 방임 · 자기방임의 예측징후로는,
대·소변 냄새, 옷과 몸에서 악취가 나며 개인위생관리가 안된 상태
땀띠, 염증, 욕창, 이 등이 방치되어 노인의 건강에 위험한 상태
노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치료가 제공되지 않음
식사를 자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복지관 및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를 스스로 거부함(자기방임)

• 사례2
"어르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 보실래요?"
"……. "
얼마 전부터 말을 걸어보아도 대답도 안 하시고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고 계신다. 기존에 참여하셨던 프로그램도 모두 싫다고 하시며 식사, 약 복용도 거부하시는 M노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요양보호사들도 일손이 부족할 때는 M노인에게 유동식을 제공하고 의료적 처치에도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경우 바람직한 대처방안으로는,
먼저 보호자에게 노인의 상태를 알리고, 우울 증상을 보이는 노인에 대해서는 그 증세 등을 기록으로 남겨 추이를 살피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편의를 위해 일반식 섭취가 가능한 노인에게 의사와 상관없이 유동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혼자서 시간을 가지게 할 시에도 틈틈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 유기
• 사례1
A어르신의 보호자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 간다.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후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기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도 장기 체납 중이다.
이 경우 유기의 예측징후로는,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사례2
A어르신의 보호자가 연락이 끊긴 지 벌써 3달이 다 되어 간다. 어르신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하신 후 연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터 기관의 전화도 받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도 장기 체납 중이다.

이 경우 바람직한 대처방안으로는,
유기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로, 보호자로서 부양을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노인학대에 해당합

	니다. 이에 보호자에게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면회, 전화통화 등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이어가도록 유도해야 하며 어르신의 전원 및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